

# 영문 화재보험 (FOC) 분쟁

시위 농성중 발생한 화재사고가 폭동·  
소요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의 여부

## 1. 사건개요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소재 D어패럴(주)는 K화재해상보험(주)를 사사로 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 D어패럴(주), 보험기간: '84. 6. 1~'87. 6. 1. 보험금액: 43억 7천 7백 60여만원(2차년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문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85. 6. 24. 상기 어패럴(주)에 노사분규가 발생, 노조원 280여명이 동사 제1공장 생산1과 작업장을 점거하고 농성시위를 계속하던 중 '85. 6. 29. 08시 20경 동사의 비노조사원들에 의해 강제해산될 때 농성장에 있던 해고근로자 1명이 시위시 소지하고 있던 횃불뭉치로 현장 재단반에 있는 포장박스 및 원단 등 인화성이 있는 물질에 방화를 시도하였다. 그 직후 출동한 소방대와 회사직원들의 진화작업으로 화재는 수분후에 진화되었다. 진화되는 과정에서 소화수 살포로 인한 소방피해(수침손)가 발생하였다. D어패럴(주)는 손해액 사정을 I손해사정(주)에 의뢰하였고 I손해사정(주)는



이 헤 구  
(한국보험공사 조정과장)

다음과 같이 이재상황을 조사 보고하였으며 D어패럴(주)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게되었다. ●보험목적물개요: 상기 어패럴(주)는 D그룹 계열사로 의류 봉제업체이며, 생산제품 전량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로서 구로 공단에 3개공장, 대구공장, 부산관리본부등을 운영하며 41개 하청업체와 협업체제를 이루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구로공단에 위치한 본사 공장구내에는 1, 2공장이 입주하고 있으며 대지 약 6천7백여평 위에 연건평 7,180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에 재단기 재봉

기를 비롯한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 화재경위: 생략

● 손해액 사정:

가액 = 11,322,000,000원

손해액 = 151,724,965원

잔존물가액 = 57,500,000원

## 2. 당사자 쟁점

본 건에 대해 K화재해상보험(주)는 사고발생 후 현장실사, 경찰조사 및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된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사분규에 따른 단체농성, 대학생가세, 노조원과 비노조원과의 대립, 농성자 강제해산등 폭동, 소요에 관련하여 발생한 이상 상태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사고이므로 동 보험약관(F.O.C) 제6조 D항[이 보험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다음 사실에 기인 또는 관련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D): 폭동, 소요, 군사력 또는 민중의 봉기, 반란, 모반, 혁명, 군사력 또는 찬탈자의 지배, 계엄령이나 포위 상태의 선포 또는 그유지를 결정하는 사태 또는요인]에

의거 보상할 수 없고 동맹파업, 폭동, 소요, 특약조항을 첨부하지 않은 동 보험하에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인 D어퍼럴(주)는 영문화재보험 보통약관 6조는 보험자의 면책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전쟁 및 그에 준하는 치안유지가 불가능한 정치, 사회적 비상상태를 열거한 것으로 일부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행한 집단 파업 및 농성이 이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고 농성자를 강제 해산할 때 의견이 다른 직원간에 다소의 마찰로 인한 사고를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근로자의 대학생들의 시위도중의 강제해산을 폭동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임에도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유를 무시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특약조항(SRCC)은 그 내용이 폭동, 동맹파업중의 폭동 및 민간소요에 기인한 직접손해를 담보한다는 것으로 손해를 끼친자의 범주에 동맹파업자 또는 공장폐쇄로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 사고 방화범은 이미 면직되어 사고 당시 당사의 피용인이 아니었으므로 특약으로 담보할 사항도 아니라고 반박 함으로써 본건 분쟁에 이르게 되었다.

### 3. 판정요지

「...이 보험약관 제6조 D항의 규정에 의하면 mutiny, riot 등에 기인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보험 약관은 영국의 화재보험 회사 외국위원회(F.O.C(Foreign))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영국의Ri-

ot Act 및 판례등에 의하여 형성된 이 보험약관상의 riot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폭동의 통상적인 개념과는 달리 첫째, 3인 이상의 집단일 것 둘째, 공동의 목적을 가질 것 셋째, 공동목적의 수행 또는 착수가 있을 것 넷째, 공동목적의 수행을 제지시키려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면 힘으로써 상호 협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것 다섯째, 힘 또는 폭력(force or violence)이 파괴에 사용될 뿐 아니라 상당히용기 있는 사람을 적어도 한 사람 이상 협박하는 방법으로 나타날 것으로 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니(따라서 riot를 폭동으로 번역할 수는 없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영문의 약관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영국의 Riot Act상의 riot 개념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보상 책임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건 사고는 위에 인정된 riot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으로서의 위 면책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한 보상책임을 없다할 것이다.」

### 4. 후설

영국에서는 18세기에 civil commotion 이, 19세기에 riot가 화재보험증권에서 면책위험으로 정해졌고 미국에서는 양자 모두 19세기에 들어서부터 정해졌다. 영·미의 어느 Standard Fire Policy에도 riot, civil commotion의 정의는 되어있지 않으며 확장담보 약관에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의미는 양국의 판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영국에서는 보험증권에서 말하는 바의 riot란 사회통념상의 것이 아니라 엄격한 법적의미로 해석된다. 특

히 영국에는 Riot Act란 법률이 1714년에 제정되었는데 당초는 적어도 12명 이상의 사람이 평화를 교란하고 집회를 소란스럽게 1시간 이상이나 계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이후 1886년 개정된 이 법에 의해 당국에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1907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의해 상기 5가지 요건이 제시된 것이다.

이 사건은 극히 유명하여 riot에 관한 주요 판례라고 할 수 있어 이 5가지 요건이 많은 영국의 참고서에 꼭 인용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영한사전에는 riot를 폭동, 소동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당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riot를 폭동이라 해석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문 그대로의 표현을 살려 본 분쟁의 요인을 상기 열거한 riot의 5가지 요건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즉 신문보도내용 및 기타 관련자료에 나타난대로 노사분규에 따른 단체농성, 대학생가세, 노조원과 비노조원과의 대립, 농성과 강제해산등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는 위에 인정된 riot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문화재보험약관 제6조 D항 번역문에는 「폭동, 소요...」로 되어 있으나 이의 해석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 무조건 폭동, 소요라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적어도 상기 제시된 5가지 요인을 모두 충족하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 역울하게 피해를 보는 피보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